



# 근로장려세제 (EITC)

근로장려세제 제도에 대해 아직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아 이번호에서는 근로장려세제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는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해 일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 국형 복지제도로써 초년도의 경우(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지급)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겐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2. 시행취지

동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그동안 소득 파악이 미흡한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인프라가 확충되어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한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확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한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건

동 제도는 현재 근로자, 즉 저소득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1)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2)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 3) 무주택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의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대 장려금이 120만원이다.

### 5.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방안(재경부안)

오는 2011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현재 처음으로 시행되는 동 제도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연간 총 사업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사업소득자를 추가, 자영업자도 근

로자와 똑같은 EITC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양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소득요건 등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오는 2011년부터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 6.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 7.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매년 9월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표〉 근로장려금 지급액

연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800만원	근로소득 × 15%
800만원~1,200만원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24%